

부산지방법원 2023. 3. 23 선고 2022가단340778 판결 [보증채무금]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피 고 C

변 론 종 결 2023. 3. 16.

판 결 선 고 2023. 3. 2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281,165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9.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리스계약

(1) 원고는 2021. 3. 30. (주)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The New GLS 220d 벤츠 승용차 1대에 관하여 ‘① 취득원가 71,628,480원, ② 이율 8.4268%, 연체이율 20%, ③ 리스기간 60개월’의 각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2) 피고는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계약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잔여 리스료 등 채권

소외 회사는 2022. 7. 1.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리스료의 납부를 지체하기 시작하여 2022. 8. 5.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데, 2022. 9. 2. 현재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잔여 리스료 등 채무는 합계 59,281,165원(이하 ‘이 사건 리스료’라고 한다)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6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일응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리스료 59,281,165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리스료 계산일 다음날인 2022. 9.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이자율인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당시 소외 회사의 실사주 E가 “자신이 집행유예기간 중이니, 6개월만 대표이사를 맡아달라. 피고에게는 전혀 손해가 가지 않게 하겠다”며 피고를 기망하여 바지사장으로 취임하게 한

후, 이 사건 계약시 연대보증인으로 날인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금융기관으로서 제3자인 원고가 알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도균